#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 : 임오경·윤관석·박영순

전용기 · 고용진 · 천준호

양기대・유정주・조오섭

이성만 · 송재호 · 이수진

이용빈 · 윤재갑 · 소병철

김경만 • 정일영 • 홍성국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면) ① (생 략)	<u>감면</u> )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
	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
	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
	<u>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u>
	<u>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u>
	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
	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
	<u>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③ 제1항 및 제2항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	
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